

「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01월 13일 장문혁의원이 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우리군 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 
사업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,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  
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에 있어 평창군 거주기간과  
해당사업영위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나.. 지원대상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비율을  
기존 최대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(안 제8조제3항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군 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 
사업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,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

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.

○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8조제2항에서는

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에 있어 관내 거주기간과 해당 사업  
영위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,

안 제8조제3항에서는

지원대상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비율을  
기존 최대 50에서 80퍼센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○ 조례안은

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,  
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부서별 시설개선 추진사업에  
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 
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#### 4 참고자료: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